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3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28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3. 29(금)	담당부서	엔지니어링디자인과
담당과장	최영수 과장(044-203-4550)	담 당 자	박성우 서기관(044-203-4551)

적정대가 산정을 위해 6개 분야 「엔지니어링 표준품셈」 마련

- 국토계획, 교통, 수자원 조사 · 계획, 해양조사 등 6개 분야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6개 분야*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하였다.

* 국토계획, 교통, 수자원 조사·계획, 정보통신공사 감리,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, 해양조사 등 6개 분야

** 품셈 : 공종별 단위기준 당 투입인원수,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시 인건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

□ 그 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,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,

○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, 고급인력 유입 감소,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.

□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,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,

○ 지난 '16.10월 "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"을 발표하였으며,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「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」으로 지정('17.12월)하여, 체계적인 표준품셈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.

□ 이번에 마련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,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사업자,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,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.

○ 이번 표준품셈은 발주청 및 업계 대상 제·개정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(심의위원회*)하고, 조사연구 수행(전문기관) 및 검토(부문위원회**, 전문가협의회***), 표준품셈 심의(심의위원회), 소관부처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마련되었다.

* 심의위원회 : 제·개정 항목의 선정 및 심의 등을 수행하며, 관련 중앙부처·지자체와 업계로 구성

** 부문위원회 : 관련 품셈의 내용을 검토 및 조정하며,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지자체, 공기업 등 발주청과 업계 및 학계로 구성

*** 전문가협의회 :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실무적 지원을 하며, 업계 실무 책임자로 구성

○ 이렇듯 체계적인 제·개정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, 수요자(발주청)와 공급자(업계)가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셈 내용을 함께 검토·조정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품셈이 발주청과 업계에 보급·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청·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, 전산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발주청과 업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,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성우 서기관(☎ 044-203-45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주요 내용

◈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및 신사업의 수요 등에 따라 **6개 분야 165종**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

분 야	주요 내용
①국토계획 (96종)	스마트도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'스마트도시계획', 대형화·다양화 되는 기후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'재해취약성분석' 등
②교통 (39종)	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'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평가' 등
③수자원 조사·계획 (9종)	수자원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'하천 및 유역조사', '하천관리 및 정비계획' 등
④해양조사 (13종)	'해양관측', '해양예보', '해양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' 등
⑤정보통신감리 (1종)	과기정통부의 '정보통신감리 업무수행지침'이 제정됨에 따른 '정보통신감리
⑥건축기계설비 (7종)	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계설비의 '실시설계', 'VE 설계', '건축물 성능 및 인증', '시뮬레이션', '진단 및 평가' 등

참고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개요

□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(한국엔지니어링협회) 개요

○ 지정근거 :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 및 「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」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

○ 주요업무

- 엔지니어링 품셈 제·개정 사업
- 표준품셈 해석 및 보급
- 품셈관련 연구 및 조사
- 심의위원회, 부문위원회 등 운영

□ 추진 경과 및 일정

○ '17.05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 개정

※ 표준품셈의 관리조항 신설,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근거 마련

○ '17.1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(한국엔지니어링협회)

○ '18.0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수요조사 실시

○ '18.04 표준품셈 항목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
○ '18.06~11 조사연구, 중간 심의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개최(부문별 3회)

※ 조사연구 : 6개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연구 수행

○ '18.12 표준품셈(안) 심의위원회 심의/의결

○ '19.02 표준품셈(안)에 대한 소관부처별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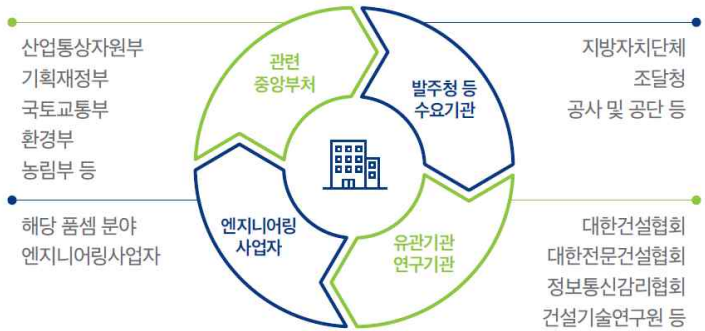
○ '19.03 표준품셈 인가·보급

□ 표준품셈 제·개정 절차

○ 수요분석 → 제·개정 항목 선정(심의위원회) → 제·개정 조사연구 → 품셈 인가(심의위원회)의 절차에 따라 표준품셈을 마련

① 수요분석 및 제·개정 항목 검토	② 제·개정 항목 선정	③ 제·개정 조사연구	④표준품셈 인가/보급
(수요조사 및 발주현황 분석)	(심의위원회)	(전문가 협의회 및 부문위원회 운영)	(심의위원회)
<1~3월>	<3~4월>	<4~11월>	<12월>

○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,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업계 및 학계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표준품셈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



□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적용대상

○ 전체 공사과정에서 시공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 전체에 적용

